



문서번호	주민생활과-742
결재일자	2015. 1. 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지방행정주사	복지기획팀장	주민생활과장	주민생활국장	
이금선	이병운	최성연	01/13 박기웅	
협조				

- 주민생활국의 혼용적인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-

2015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



성 동 구
(주민생활과)

- 주민생활국의 혼용적인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-
2015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

주민생활국의 주요 현안업무 조정, 협의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관운영·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을 실시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(행정자치부령 제1호, 2014. 11. 19)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1, 2015. 1. 1 개정)

II 운용방향

- 접대성 경비 집행,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원칙
- 현금지출은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한 격려금, 조의금, 축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
-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범위에서 집행(목적, 일시, 장소, 대상 기재)
-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,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재해 의연금 등 각출성 성금 집행불가

III 집행개요

- 기 간: 2015. 1. ~ 12.
- 대 상: 직원 경조사비, 주민생활국 관련 업무 조정 및 유관기관 협의
- 방 법: 매월 배정요구 후 카드사용 건별 지급품의
- 예산액: 8,316천 원(기관운영업무추진비 2,970천 원 포함)

○ 예산과목
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: 총무과, 행정운영경비(총무과), 기본경비(총무과), 기본 경비(총무과), 업무추진비, 기관운영업무추진비(203-01)
- 시책추진업무추진비: 주민생활과, 주민생활지원,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,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, 국가유공자 위문, 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(203-03, 주민생활국 업무추진)

IV

세부 추진계획

■ 기관운영업무추진비

- 기 간: 2015. 1. ~ 12.
- 집행내용
 - 축의·부의금
 - 대 상: 주민생활국 소속 직원 및 직계존비속
 - 방 법: 혼주(상주)에 직접 경조사비 전달(현금 지급)
 - ※ 주민생활국 소속 외 퇴직직원 및 가족 경조사 등에 집행불가
 - 주민생활국의 격무부서(외근) 및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직원 격려
- 예 산 액: 2,970천 원(월 247,500원)

■ 시책추진업무추진비

- 기 간: 2015. 1. ~ 12.
- 집행내용
 - 주민생활지원 정책추진
 - 주민생활국 관련 업무 조정 및 협의
 -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, 간담회, 행사, 유관기관 협의 등
 - ※ 노래방, 주점, 심야시간, 휴일 및 거주지 근처 사적사용 등 불가
- 방 법: 매월 일괄 배정받아 사용 건별 지급품의
- 예 산액: 5,346천 원(월 445,500원)

- 매월 재무과에 일괄 배정요구 후 카드사용 건별 지급품의 확행
-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매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
-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소속, 성명 반드시 기재
- 집행내역서 작성 철저(일시, 장소, 목적, 대상)